

범주: 학생

발행: 2011/8/18

번호: **A-755**

제목: 자살예방/중재

페이지 1 의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1년 1월 20일자 A-755을 대체합니다.

변경 사항:

- 본 규정은 자살을 시도하였거나 잠재적 자살 가능성을 보인 학생들을 CSE 에 의뢰하거나 이들을 위한 504 회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섹션 III.D, 5 페이지; 첨부 1 번 참조.)
- 본 규정은 칠드런 퍼스트 네트워크(Children First Networks: CFN)를 포함한 현 교육청 조직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 1 번 참조.)
- 관련 자료는 신규 및 현재 제공 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갱신 되었습니다. (첨부 2 번 참조)

개요

본 규정은 2011년 1월 20일자 규정 A-755를 대체합니다. 최근 학령기 청소년의 자살 및 자살시도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잠재적, 실질적인 자살행위에 대처하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 학교의 학교 위기 중재 계획(School Crisis Intervention Plan)의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은 학생들이 잠재적 자살 가능성을 보이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해당 학생이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쳐줄 것을 요청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학교장 또는 그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학교 정신 건강 프로그램(SBMHP)에 소속된 훈련 받은 가이드نس 카운슬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정신건강 전문 담당자만이 적절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들 담당 교직원은 학교의 위기 대응/예방 교육/중재 팀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학교장이 임명한 교감이나 가이드نس 카운슬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담당직원 등은 학생의 자살 행동을 학부모에게 고지해야 하며* 교육청의 “온라인 사건 보고서(On-line Occurrence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문

자살 의도가 있는 학생은 대개의 경우 또래 친구나 교사, 또는 기타 주변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직원(교직 및 비교직)들은 이러한 자살 경향을 암시하는 행동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심각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I. 행정관리

각 초등, 중등, 주니어 하이, 고등학교 및 뉴욕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A. 교직원 중 한 명을 학교 자살 방지 담당관(School Suicide Prevention Liaison)으로 임명합니다. 임명된 교직원은 자살 방지교육/중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해당 학교와 찰드 퍼스트 네트워크(CFN) 청소년 발달 담당관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합니다. 이 담당관은 교육청의 “온라인 사건 보고 시스템(OORS)” 자살 보고서 작성 책임을 집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위기 중재 팀(Crisis Team)"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아래 섹션 I.B 참조)
- B. 학교 위기 대응/예방 교육/중재팀(일명 "위기 중재 팀")을 조성합니다. 본 위기 중재 팀은 기존의 학생담당 또는 종합 보건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중재 팀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자살 방지 담당관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기 중재 팀은 다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팀으로서 학교장과 자살방지 담당관으로 지명된 자, 가이드نس 카운슬러, 교사, 학교 지원팀 멤버, 약물중독 방지 및 중재 스페셜리스트(SAPIS), 보건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호교사,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SBMHP) 및 기타 자살 문제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 교직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C. 해당 학교의 자살 방지/중재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D. 자살 예방 참고 안내서 - 자살 위험 경고 신호 및 방지 절차(첨부 1번) 및 “뉴욕시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Mental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NYC Youth)” (첨부 2번)이 학교의 모든 교직원에게 배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E. 자살 예방 참고 안내서, 위기 중재팀 명단 및 중재 절차 등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관, 혹은 그 밖에 학부모가 부모역할을 대신 하도록 지명한 사람(loco parentis),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말합니다.

- F. 필요한 경우 다음의 뉴욕주 정신건강국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 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www.omh.state.ny.us/omhweb/licensing/bic/locatebic1.asp>.

II.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예방 교육의 목적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교직/비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에게 자살의 징후와 자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알려주고 이들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예방/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살의 경고 신호나 징후는 기타 요인 및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살의 경고 신호나 징후는 참고 안내서(첨부 1번)를 참고합니다.

A. 위기 중재 팀의 책임

각 학교의 위기 중재 팀은 반드시:

1. 자살 위험성을 보이는 학생에게 중재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을 적시한 학교 위기 중재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자살 예방 교육/중재 및 후속중재(후속조치) 방안과 활동;
 - b. 각 중재안의 적용 시기에 관한 계획;
 - c. 계획 실천에 참여할 각 교직원의 이름과 역할, 의무; 및
 - d. 본 계획이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2. 매 학년도가 시작되면 2개월 내로 학교 교직원들에게 자살 예방 및 중재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합니다. 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자살 예방-교육/중재 계획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본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장 컨퍼런스, 학생담당 직원 회의, 교사 컨퍼런스, 비교직 담당자 및 학부모 회의 등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전문성 개발 활동을 실시합니다. 본 연수에서는 학생의 자살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학교장이나 학교장을 대리하는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특히 강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 요인, 위험 행동,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살 징후, 의뢰 절차, 후속조치 전략 등을 안내하고 잠재적인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의 특별한 필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등에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교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의 돌이킬 수 없음을 이해시키고 필요할 경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등,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발달 상황에 적절하고 다양한 학생 계몽 활동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5. 학교 공동체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조직, 조율하고 외부 정신보건 기관 및 병원과의 연락체계를 형성하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단체가 자살 예방-교육/중재 전략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합니다. 본 훈련은 해당 학교의 종합 보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합니다. 중재 팀은 지역사회 기관/집단들이 훈련 세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합니다. 학교 중재 팀은 외부 전문 병원/기관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지속적인 대화체제를 확립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상호 협조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합니다.
6. 지역사회 정신 보건 기관 및 병원에 해당 학교의 자살 예방-교육/중재 활동에 관해 알립니다. 위기 중재 팀은 해당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살 예방 자원을 상세히 기록한 목록을 작성하고 각 기관 및/또는 병원과의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합니다. 본 연락처/기관 목록은 매년 갱신하도록 합니다.

III. 중재 절차

모든 교직원은 학생의 잠재적 자살 가능성이나 자살시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이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쳐줄 것을 요청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학교장 또는 그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 자살 시도

1. 중재 조치

학생의 자살 시도를 알게 된 교직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a. 해당 교직원은 즉시 도움을 청하고 학교장/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 b. 교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학생을 혼자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c. 교직원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d. 교직원은 즉시 911에 연락하여 학생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게 합니다.
- e. 학교장/담당자는 반드시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가 즉시 학교나 학생이 후송된 병원으로 올 수 있게 합니다. 만일 학생이 부모가 오기 전에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할 경우, 교직원 중 한 명이 반드시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합니다. 학생과 병원까지 동행한 교직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후속 중재/후속 조치

학교장/담당자는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후 학생 본인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a. 해당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대화하며 SBMHP 또는 기타 외부 치료 서비스 제공자와 연락하여 적절한 학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 b. 계속해서 적절한 학습지도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어떤 학생도 "의료진의 완쾌 확인"을 기다리는 중이나 "복교 허가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 수업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 c.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면 적절한 가이던스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i. 학생 및 학생 가족과 연락 유지;
 - ii. SBMHP, 병원 및 정신보건 기관과의 연락;
 - iii.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iv. 필요한 경우 학교 프로그램의 조절; 및/또는
 - v. 교내 서비스와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도움을 통합.
 - vi. 학생의 자살 시도에 연루된 교내 인원이 다수일 경우, 위기 중재 팀은 학생과 직원들이 해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 자살 행동

1. 경고 징후

학생이 구체적인 자살 행동 계획을 말이나 글로서 표현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동패턴을 복합적으로 보일 경우 해당 상황을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심각하고 지속적인 사망자에 대한 애도
- 자해 시도 전력
- 심한 위축/고립
- 무기력한 감정
- 만성 우울증
- 만성 약물 중독
- 학교 생활이 점점 퇴화함
- 경계에 관한 감각 상실
- 감정 상실/부적절한 감정
- 분노/화

2. 중재 조치

교직원은 학생의 자살 행동을 인지하게 된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a. 즉시 학교장/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 b. 필요한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합니다.
- c. 학교장/담당자는 즉시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의 심각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알리고 즉각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SBMHP에 의뢰, 인근 병원이나 정신보건 기관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 서비스 위치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 d.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방식이나 도구에 관해 진술했을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부모에게 알려 차후 예방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또한 해당 학부모에게는 "자살수단 제한조치"에 관한 카운슬링을 실시하여 학생이 자살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예, 위험한 무기 또는 약물 등)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3. 후속 중재/후속 조치

학교장/담당자는 사후에도 해당 학부모 및 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학교장/담당자는 반드시 위기 중재 팀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중재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직원들은 본 규정에 첨부된 자살 예방 참고 안내서-자살 예방 절차 가이드 (첨부 1번)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C. 자살 의도

1. 중재 조치

학생이 자살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고, 자살 예방 절차 안내서(첨부 1)에 적시된 위험 신호 중 몇 가지를 나타낼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a. 위기 중재 팀이 해당 상황을 평가하여 적절한 중재 및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 b. 학생의 이러한 행동을 인지하게 된 교직원은 즉시 학교장/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 c. 학교장/담당자는 반드시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립니다.

2. 후속 중재/후속 조치

위기 중재 팀은 학생의 부모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실천할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기 중재 팀의 일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해당 학생과 정기적으로 만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의 진척 과정을 모니터합니다;
- 교내 후속조치 및/또는 외부 치료서비스 기관과의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학생을 SBMHP 또는 외부 정신 감정 프로그램, 우울증 검사 프로그램 또는 정신보건 기관에 의뢰합니다;
- 해당 학생과 가족들이 지속적인 치료 중재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 자살 예방, 교육 및 중재 팀과 대화하여 해당 학생의 진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재조치의 효과를 판단합니다.

D.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 가능성을 보였을 경우, 교직원은 필요하다면 CSE 의뢰나 504 회의 요청을 고려해 봅니다. 504 회의 실시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교육감 규정 A-710를 참조합니다: <http://schools.nyc.gov/NR/rdonlyres/381F4607-7841-4D28-B7D5-0F30DDB77DFA/97054/A7101202011FINAL.pdf>.

IV. 후속 절차

학생의 자살 시도가 있거나 실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가족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교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활동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 A.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루도록 합니다:
1. 자살과 관련된 뜬소문 차단;
 2. 학급별 소규모 그룹 토론(학생들간의 개방된 토론을 독려하고 다른 잠재적 위험이 있는 학생 식별 및 자살 모방행위 방지 목적)을 실시할 계획 수립;
 3. 필요한 경우 추도식 실시 고려; 및
 4. 학생과 교직원, 학교 공동체 전체의 슬픔에 응대.
- B. 학교 정신보건 담당자, 위기 중재 팀 구성원 및/또는 지역사회기관 등이 모여 학생 및 교직원들과 소규모 그룹 세션을 갖고 충격적 사건 뒤에 따르는 불안감과 슬픔을 해소할 수 있게 합니다.
- C. 학교장과 협의하여 해당 가정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V. 보고 절차

A. 온라인 사건 보고서

모든 교직원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자살로 인한 죽음, 자살 시도 및 자살 의도의 표현 등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1. 교직원은 즉시 학교장/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2. 학교장/담당자는 즉시 전화로 CFN 청소년 개발 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3. 학교장/담당자는 즉시 교육청의 응급 정보 센터(Emergency Information Center)에

전화 (718) 935-3210번으로 상황을 신고합니다.

4. 학교장/담당자는 사고 발생 후 1 수업일 이내에 온라인 사건 보고 시스템 (OORS)에 자살 보고를 합니다. 교육청 온라인 사건 보고 시스템은 다음 웹주소로 접속합니다:
<https://ats.nycboe.net/safety/portal/>.
5. 학교장/담당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OORS 후속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에서는 OORS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기술적 질문에 응대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헬프데스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8:00 AM 에서 6:00 PM 사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에 연락하려면 (718) 935-5004번으로 전화하여 OSYD Web Support와의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B. 뉴욕주 아동 학대 중앙 신고실(New York State Central Register for Child Abuse and Maltreatment)로의 보고(교육감 규정 A-750, '아동학대의심 보고' 참고).

1. 모든 교직원은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본인이 직접 뉴욕주 아동 학대 중앙 신고실(SCR), 1-800-635-1522에 연락하여 구두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a. 학생이 잠재적 자살 행동을 보였으며, 학교에서 해당 학생이 학대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 b. 해당 학생이 지속적으로 위험에 처해있으나 부모가 학교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거나 대안적 중재 조치를 받는 것을 거부할 경우.
2. SCR에 구두 보고를 한 직후, 해당 교직원은 반드시 학교장/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48시간 이내에 LDSS 2221 A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양식의 사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StudentSupport/NonAcademicSupport/ChildAbuse/default.htm>
(교육감 규정 A-750 - 아동 학대 의심 보고 참조).

VI. 기술적 지원

CFN 청소년 개발 담당관은 본 규정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 예방 및 중재 계획, 교사 대상 연수 실시 및 자살 예방과 중재에 관한 교재 마련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에 아래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VII. 문의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u>전화:</u>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Suicid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 Room 218 New York, NY 10007	<u>팩스:</u>
212-374-0805		212-374-5751